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☐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황유정 의원입니다.
- ☐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
드립니다.
- ☐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53호
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
드리겠습니다.
- ☐ 성평등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‘성평등 기금’을 ‘성평등
가족 기금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기금 대상에 기업을 포함하여
기금의 정책대상 확대 및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며, 기금 재정
규모 확대를 위해 서울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을 기금
재원에 추가하고자 합니다.

☐ 또한,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